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세계산림총회 및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신규로 증원하고, 2019년 증원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감축하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림 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설치한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 기구 및 기구신설에 따라 직급 상향 조정한 인력 1명(4급)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31일에서 2022년 7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불 방지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증원한 인력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31일에서 2022년 7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통신업무 강화를 위하여 산림청 인력 1명(8급 1명)과 산림항공본부 인력 1명(6급 1명)을 상호 이체하고, 직렬간의 벽을 허물어 인력운용 및 인사관리에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인력 443명(4·5급 4명, 5급 42명, 6급 167명, 7급 102명, 8급 126명, 9급 2명)을 복수직렬(행정·임업직렬)로 조정하되, 공중진화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복수직렬로 운영하던 산림항공본부 인력 2명(8급 2명)을 임업직렬로 조정하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 일부 직위의 보임범위를 복수직렬로 확대하고,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으로 조정하며, 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 0. ~ 2021.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13. 석재산업 진흥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 14.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제도 운영

제12조제2항 중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사무관”을 “행정사무관 · 임업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4항제10호 중 “채수포(採穗圃)”를 “채수포(採穗圃: 꺾꽂이 · 접목 등 영양번식을 위한 유전자의 채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을 말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임업사무관”을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술서기관”을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11명”을 “12명”으로, “행정주사보 또는”을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으로 한다.

별표 3 전산주사 3 다음에 “방송통신주사 1”을 신설하고, “방송통신서기

1”를 삭제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320”을 “321”로 하고, 일반직 계 “315”를 “316”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63”을 “64”로 하고, 전산주사 3 다음에 “방송통신주사 1”을 신설하며, “방송통신서기 1”을 삭제한다.

별표 5 행정사무관 · 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 3 다음에 “행정사무관 · 임업사무관 · 간호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 1”을, 행정사무관 · 임업사무관 · 간호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 1 다음에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5”를,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5 다음에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을,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 다음에 “행정주사보 · 임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행정주사보 · 임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다음에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을 각각 신설하고, “임업사무관 · 간호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 1”을 삭제하며, “행정주사 2”를 삭제하고, “임업주사 3”을 삭제하며, “임업주사보 1”을 삭제하고, “임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삭제하며, “임업서기 1”을 삭제한다.

별표 6 기술서기관 1 다음에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을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을 삭제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11”을 삭제하고, 행정사무관 · 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3”을 “14”로 하며, “행정주사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4”를 “6”으로 하며, 임업주사 “6”을 “5”로 하고, “방송통신주사 1”을 삭제하며, 임업주사보 “27”을 “28”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1”을 “9”로 하며, 임업서기 “32”를 “34”로 하고, 방송통신서기 “5”

를 “6”으로 하며, 산림보호운영서기보 “14”를 “13”으로 한다.

별표 6의2 기술서기관 1 다음에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을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을 삭제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11”을 삭제하고, 행정사무관 · 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3”을 “14”로 하며, “행정주사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4”를 “6”으로 하며, 임업주사 “6”을 “5”로 하고, “방송통신주사 1”을 삭제하며, 임업주사보 “14”를 “15”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1”을 “9”로 하며, 임업서기 “45”를 “47”로 하고, 방송통신서기 “5”를 “6”으로 하며, 산림보호운영서기보 “14”를 “13”으로 한다.

별표 6의3 중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을 “3”으로 하고, “임업서기보 2”를 삭제한다.

별표 6의4 중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을 “3”으로 하고, “임업서기보 2”를 삭제한다.

별표 7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 다음에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3”을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을 삭제하며, “기술서기관 또는 임업사무관 2”를 삭제하고, “행정사무관 4”를 삭제하며, “임업사무관 26”을 삭제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를 “32”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32 다음에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60”을 신설하고, “행정주사 35”를 삭제하며, “임업주사 125”를 삭제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5”를 “112”로 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12 다음에 “행정주사보 · 임업주사보 또는 토목주사보

3”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 임업주사보 또는 토목주사보 3 다음에 “행정주사보 · 임업주사보 또는 임업연구사 10”을 신설하며, “임업주사보 87”을 삭제하고, “임업주사보 또는 토목주사보 3”을 삭제하며, “임업주사보 또는 임업연구사 10”을 삭제하고,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48”을 “173”으로 하며, “임업서기 125”를 삭제하고, 방송통신서기 “5”를 “6”으로 하며, 통신운영서기 “2”를 “1”로 한다.

별표 7의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 다음에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3”을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을 삭제하며, “기술서기관 또는 임업사무관 2”를 삭제하고, “행정사무관 4”를 삭제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5”를 “35”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35 다음에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57”을 신설하며, “임업사무관 26”을 삭제하고, “행정주사 32”를 삭제하며, “임업주사 125”를 삭제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5”를 “112”로 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12 다음에 “행정주사보 · 임업주사보 또는 토목주사보 3”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 임업주사보 또는 토목주사보 3 다음에 “행정주사보 · 임업주사보 또는 임업연구사 10”을 신설하며, “임업주사보 87”을 삭제하고, “임업주사보 또는 토목주사보 3”을 삭제하며, “임업주사보 또는 임업연구사 10”을 삭제하고,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56”을 “181”로 하며, “임업서기 125”를 삭제하고, 방송통신서기 “5”를 “6”으로 하며, 통신운영서기 “2”를 “1”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부칙 제3조 중 “행정주사”를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1년 7월 31일”을 “2022년 7월 3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제1항 중 “2021년 7월 31일”을 “2022년 7월 31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7명”을 “6명”으로, “5명”을 “4명”으로 하고, 같은 부칙 제4조 중 “2021년 7월 31일”을 “2022년 7월 31일”로, “2021년 8월 1일”을 “2022년 8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명은 2023년 7월 00일까지,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명은 2024년 7월 00일까지 각각 존속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산림복지국) ① ~ ⑥ (생략)	제8조(산림복지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산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설>	12.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신설>	13. 석재산업 진흥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신설>	14.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 지관리제도 운영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제12조(산림항공본부) ① (생략)	제12조(산림항공본부) ① (현행과 같음)
②산림항공본부에 항공지원과 · 산림항공과·항공정비과 및 항공안전과를 두되, 항공지원과 장은 <u>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u> 으 로, 산림항공과장은 기술서기관 으로, 항공정비과장 및 항공안 전과장은 <u>서기관·기술서기관</u> ·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 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 --- <u>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u> ----- -----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5명 중 3명은 2023년 2월 1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2월 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u>행정주사</u> 3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 ----- ----- ----- ----- ----- ----- ----- ----- <u>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u>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은 <u>2021년 7월 3</u>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 ----- ----- ----- ----- ----- <u>2022년 7월 31</u>

1일까지 존속한다.	<u>일</u> -----.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명은 <u>2021년 7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 ----- ----- --- <u>2022년 7월 31일</u> ----- -----.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u>7명</u>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u>5명</u> ,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은 각각 2022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 ----- <u>6명</u> ----- ----- ----- <u>4명</u> , ----- ----- -----.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은 <u>2021년 7월 31일까지</u> 존속하며, <u>2021년 8월 1일</u>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으로 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 ----- ----- <u>2022년 7월 31일</u> ----- <u>2022년 8월 1일</u> ----- ----- -----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전산주사	1		
<u>방송통신주사</u>	<u><신 설></u>	<u>1</u>	+1
•	•	•	
•	•	•	
<u>방송통신서기</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3의2]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20</u>	<u>321</u>	+1
•	•	•	
•	•	•	
일반직 계	<u>315</u>	<u>316</u>	+1
•	•	•	
•	•	•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u>63</u>	<u>64</u>	+1
•	•	•	
•	•	•	
전산주사	1		
<u>방송통신주사</u>	<u><신 설></u>	<u>1</u>	+1
•	•	•	
•	•	•	
<u>방송통신서기</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5]

산림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2항 관련)

.	.	.	
---	---	---	--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	3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	<신 설>	1	+1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신 설>	5	+5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신 설>	1	+1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신 설>	1	+1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신 설>	1	+1
임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	1	<삭 제>	-1
행정주사	2	<삭 제>	-2
임업주사	3	<삭 제>	-3
임업주사보	1	<삭 제>	-1
임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삭 제>	-1
임업서기	1	<삭 제>	-1
.	.	.	

[별표 6]

산림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기술서기관	1		
<u>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u>	<u><신 설></u>	<u>1</u>	+1
<u>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u>	<u>1</u>	<u><삭 제></u>	-1
<u>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u>	<u>11</u>	<u><삭 제></u>	-11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 는 항공사무관	<u>3</u>	<u>14</u>	+11
<u>행정주사</u>	<u>1</u>	<u><삭 제></u>	-1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u>4</u>	<u>6</u>	+2
·	·	·	
임업주사	<u>6</u>	<u>5</u>	-1
·	·	·	
<u>방송통신주사</u>	<u>1</u>	<u><삭 제></u>	-1
·	·	·	
·	·	·	
임업주사보	<u>27</u>	<u>28</u>	+1
·	·	·	

·	·	·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u>11</u>	<u>9</u>	-2
·	·	·	
임업서기	<u>32</u>	<u>34</u>	+2
방송통신서기	<u>5</u>	<u>6</u>	+1
·	·	·	
·	·	·	
산림보호운영서기보	<u>14</u>	<u>13</u>	-1
·	·	·	
·	·	·	

[별표 6의2]

산림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기술서기관	1		
<u>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u>	<u><신 설></u>	<u>1</u>	+1
<u>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u>	<u>1</u>	<u><삭 제></u>	-1
<u>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u>	<u>11</u>	<u><삭 제></u>	-11
행 정 사 무 관 · 임 업 사 무 관 또는 항공사무관	<u>3</u>	<u>14</u>	+11
<u>행정주사</u>	<u>1</u>	<u><삭 제></u>	-1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u>4</u>	<u>6</u>	+2
·	·	·	
임업주사	<u>6</u>	<u>5</u>	-1
·	·	·	
<u>방송통신주사</u>	<u>1</u>	<u><삭 제></u>	-1
·	·	·	
·	·	·	
임업주사보	<u>14</u>	<u>15</u>	+1
·	·	·	

·	·	·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u>11</u>	<u>9</u>	-2
·	·	·	
임업서기	<u>45</u>	<u>47</u>	+2
방송통신서기	<u>5</u>	<u>6</u>	+1
·	·	·	
·	·	·	
산림보호운영서기보	<u>14</u>	<u>13</u>	-1
·	·	·	
·	·	·	

[별표 6의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u>1</u>	<u>3</u>	+2
<u>임업서기보</u>	<u>2</u>	<u><삭 제></u>	-2
·	·	·	
·	·	·	

[별표 6의4]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u>1</u>	<u>3</u>	+2
<u>임업서기보</u>	<u>2</u>	<u><삭 제></u>	-2
·	·	·	
·	·	·	

[별표 7]

지방산립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신 설>	3	+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삭 제>	-1
기술서기관 또는 임업사무관	2	<삭 제>	-2
행정사무관	4	<삭 제>	-4
임업사무관	26	<삭 제>	-26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	32	+30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신 설>	160	+160
행정주사	35	<삭 제>	-35
·	·	·	
임업주사	125	<삭 제>	-125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5	112	+87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 는 토목주사보	<신 설>	3	+3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 는 임업연구사	<신 설>	10	+10

임업주사보	87	<삭 제>	-87
임업주사보 또는 토목주사보	3	<삭 제>	-3
임업주사보 또는 임업연구사	10	<삭 제>	-10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48	173	+125
임업서기	125	<삭 제>	-125
·	·	·	
방송통신서기	5	6	+1
·	·	·	
·	·	·	
통신운영서기	2	1	-1
·	·	·	
·	·	·	

[별표 7의2]

지방산립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신 설>	3	+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삭 제>	-1
기술서기관 또는 임업사무관	2	<삭 제>	-2
행정사무관	4	<삭 제>	-4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5	35	+30
임업사무관	26	<삭 제>	-26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신 설>	157	+157
행정주사	32	<삭 제>	-32
·	·	·	
임업주사	125	<삭 제>	-125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5	112	+87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토목주사보	<신 설>	3	+3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임업연구사	<신 설>	10	+10

임업주사보	87	<삭 제>	-87
임업주사보 또는 토목주사보	3	<삭 제>	-3
임업주사보 또는 임업연구사	10	<삭 제>	-10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56	181	+125
임업서기	125	<삭 제>	-125
·	·	·	
방송통신서기	5	6	+1
·	·	·	
·	·	·	
통신운영서기	2	1	-1
·	·	·	
·	·	·	